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84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김용만・남인순・박범계 천준호・허 영・김남근 조승래・김영배・김태선 허성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생 략)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